

2019년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고숙련·신기술 훈련과정 추가 모집 공고

2019년도 고숙련·신기술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19년 10월 4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1 사업 개요

사업목적

- 산업구조 고도화에 맞춰 일정한 숙련을 지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통한 기업의 핵심인재로 육성
- 신기술 습득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고용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

(사업규모) 40억 원

(지원과정)

- (고숙련과정) 일정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5수준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훈련

○ (신기술과정)

- 법령 등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, 활용, 제품의 생산,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
- 민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제시된 8개 분야 기술의 습득, 활용, 관련 제품의 생산,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

< 참여 가능 기관 >

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

- 소속 근로자 및 협력관계(계열사 포함)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로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

* 타사근로자훈련과 자체+위탁 훈련 가능

* 대규모 기업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(협력업체) 근로자를 전체 훈련인원의 20% 이상 참여시켜야 함

→ 전체 훈련인원 200명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40명 이상 참여

< 과정 인정요건>

 고숙련과정

- (정의)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5수준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훈련

 (인정기준)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NCS 편성과정 : NCS 5수준 이상의 능력단위(요소)로 구성하여야 하나 해당 NCS 소분류가 5수준까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상의 수준의 능력단위(요소)로 구성한 과정 ◆ 비NCS 편성과정 :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토대로 매우 복잡하거나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 또는 그 이상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. 단, 비NCS로 편성한 경우에는 기업의 전체 훈련 체계도 내에서 해당 과정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|
|---|

 신기술과정

-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, 활용, 제품의 생산,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

- ◆ 신기술인증(NET), 신제품인증(NEP)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, 제18조의5에 의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제품으로서 과정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

- 정부 민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에 해당하는 8개 분야 기술의 습득, 활용, 관련 제품의 생산,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

- ◆ 민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8개 분야

- 스마트 제조(Smart factory, Robot 등),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(Big data, AI 등), 정보보안, 바이오(Bio-Chemical Innovation), 핀테크(Finance & Technology), 무인이동체(Unmanned aerial Vehicle), 실감형 콘텐츠(AR, VR)

< 공통사항 >

- ◆ 훈련대상은 고용보험을 취득 중인 재직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, 채용예정자, 구직자, 실업자는 지원 제외
- ◆ 훈련방법은 집체훈련만 가능(원격훈련, 스마트훈련, 현장훈련 제외)
- ◆ 훈련내용은 NCS로 편성하는 것을 권장(고숙련은 NCS 5수준이상)하되,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NCS로 설계하는 것도 가능
 - 단, 고숙련과정을 비NCS로 설계한 경우에는 기업의 전체 훈련체계도 내에서 해당 과정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
- ◆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(우선지원기업 근로자는 8시간 이상)으로 하되, 고숙련 또는 신기술과 관련된 실험, 실습 시간을 전체 훈련 시간 중 30%이상 편성하여야 함
 - 과정인정 신청서에 실험(실습)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, 실험(실습) 후 증빙자료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
- ◆ 우대사항 : 우선지원기업, 장시간 훈련, NCS 또는 실습 비중이 높은 과정, 신청과정과 신청인원이 많은 과정 등
- ◆ 지원제외
 - 일반사무행정(컴퓨터활용, 리더십, 고객만족, 영업 등)
 - 제품의 단순한 생산 또는 장비 운영에 대한 훈련
 - 법령에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훈련
 -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
 -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 제외 대상

훈련비

< 실비지원 방식 >

- 훈련비는 일반 직무훈련과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NCS직종별 단가(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1)의 300% 이내에서 지원

- NCS직종별 단가의 300%는 최대 지원한도이므로 신청기관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
 - * 신청단가가 300%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요건 불비로 부적격 처리
- 공단은 훈련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과정자체를 부적합 처리 또는 일부 조정할 수 있음

◆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

- 단순 계산 착오로 신청한 경우
- 강사 등급이 낮아져서 등급에 맞는 강사료로 조정하는 경우
- 정해진 단가가 있음에도 착오로 높게 책정한 경우(교재인쇄비, 강사료 등)
-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을 신청한 경우
- 기타 필요성이 낮거나 증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

- 심사를 통해 확정된 단가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정산절차는 없음

* 단, 회계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함

< NCS직종별 기준단가 지원방식 >

- 훈련비를 NCS직종별 기준단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 산출 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, 공단에서도 훈련비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지 않음

과정인정 신청

- 신청기간 : '19년 10월 14일 ~ 18일까지 HRD-Net으로 신청
 - 금회 접수된 과정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, 추가 신청 일자를 지정해서 추가 접수 안내 예정
- 신청방법 : 사업주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On-line 신청
- 제출서류 : 과정인정신청서, 실시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(별첨 참조)

인정(심사)절차별 심사항목(항목별 심사지표는 별첨 참조)

- (현장실사) 훈련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에 기술한 훈련 인프라(인력, 조직, 시설, 장비 등) 구축 여부 확인
 - *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, 공단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- (심사위원회 심사)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진행
 - * 승인받은 과정 또는 유사한 과정으로 훈련내용과 훈련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
 - (훈련 적정성) 기본요건, 훈련대상, 훈련내용이 고속련·신기술에 해당하는지와 목표했던 훈련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
 - * 심사지표에서 모든 적부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, 60점 이상 득점한 과정에 대해서만 적합 과정으로 인정. 심사지표는 [별첨] 참조
 - (훈련비 적정성) NCS 직종별 단가의 300% 이내에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
 - * 과다한 경우에는 비용 조정 없이 과정을 부적격 처리하거나 일부 조정
- (최종 선정)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60점 이상 훈련과정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훈련과정 최종 선정
 - ① 우선지원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신청한 과정
 - ② 우선지원기업 근로자의 참여비율이 높게 신청한 과정

5

훈련실시 및 비용신청

□ 과정 인정효력

- 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과정인정일로부터 '19년 12월 10일까지이며, 유효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훈련실시 불가
- 신청서에 기재된 과정 실시횟수만큼만 실시 가능하므로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함
 - * 예산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며,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'19년 12월 10일까지이며, 기간 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

□ 과정 변경인정

- 변경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의 사유^{*}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
 - *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한 경우
 - * 화재, 침수, 강풍 등의 재해로 승인 받은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하여 동일한 시설장비로 대체한 경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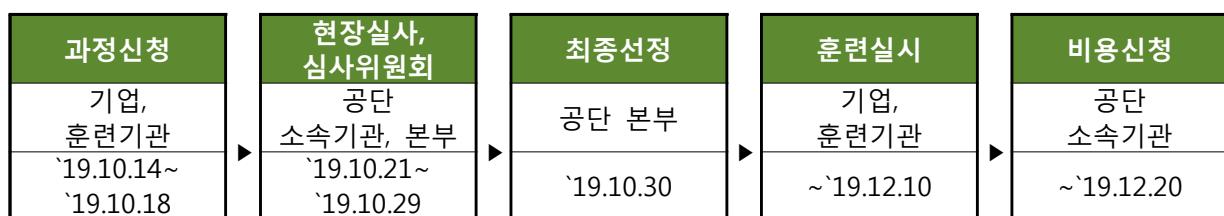
□ 훈련실시 및 수료보고

- 훈련실시, 수료보고는 일반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, 제10조, 제18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

□ 비용신청

- 비용신청은 일반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

< 절차 안내도 >



선정배제

-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-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

 선정취소

- 선정 통지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 - 선정 이후 무단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훈련을 이관 또는 재위탁한 것이 발견된 경우
 -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이 선정된 경우
 - 기타 관련 법령상에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 승인과정 부적합 시행에 대해 조치

- 과정별로 최초 승인인원의 50% 미만으로 수료하거나 승인 받은 과정을 미개설(폐강)한 경우에는 차기 과정 신청이 제한(불이익)받을 수 있음
-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전체 훈련인원의 20% 이상 우선지원기업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과정 신청이 제한(불이익) 받을 수 있음

* 과정별 20%가 아닌 모든 과정을 합한 전체 인원의 20% 이상이면 가능

 (문의처)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사업주훈련 담당자